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1999. 4. 1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진로의 부당한 광고 행위 (9812광고2251)	(주)진로는 '98.10.19.자 조선일보 등 22개 신문과 팸플릿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참眞이슬露』소주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대나무 숲의 각종 효능에 관한 내용을 광고 전반에 걸쳐 언급하고 그러한 효능들이 자신의 제품과 서로 연결되어 인식되도록 표현함으로써 마치 자신의 『참眞이슬露』소주에 대나무 숲의 효능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행위를 하였으며, “참眞이슬露는 ... 음주로 인한 미네랄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이라고 표현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마치 자신의 제품에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골고루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이미 광고한 중앙일간지 중 광고횟수가 많은 상위 2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울산남구신문협회의회 및 울산중구신문협회의회의 거래거절강요행위 (9811부사1880)	울산남구신문협회의회 및 울산중구신문협회의회는 자신의 구성사업자였던 한국일보 지국의 19개 사업자들이 광고전단의 배포수익금의 분배와 관련한 불만 등으로 '98.9.23. 자신으로부터 탈퇴하자 구성사업자의 추가탈퇴방지 등을 목적으로 '98년 9월경에 (주)주리원현대백화점과 (주)태화모드니백화점의 영업기획팀 관계자에게 자신들을 탈퇴한 한국일보 지국들에 대한 백화점 광고전단의 배포 의뢰를 거절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게 하는 거래거절강요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위반	◎ 거래거절강요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울산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과 동시에 (주)주리원현대백화점과 (주)태화모드니백화점 및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1999. 5. 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전북이동통신(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9811광사1964)	전북이동통신(주)는 '93년 8월부터 군산중앙대리점과 무선호출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호출 용역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무선호출용역위탁대리점들은 자신과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을 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영업능력이나 경영여건 등을	◎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지방일간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자신이 이를 제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계약 체결시 사용한 계약서상에 계약상대방인 군산중앙대리점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과 이를 강제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계약조항을 사용하였으며, 군산중앙대리점이 '98년 4월 SK텔레콤(주)의 영업업무를 병행하자 동 계약조항을 근거로 '98.7.8, 7.23, 8.25, 10.7. 이상 4회에 걸쳐 SK텔레콤(주)의 영업업무를 중단하도록 군산중앙대리점에게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p>	<p>(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한국토지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 (9812광고2253)</p>	<p>한국토지공사는 '97.5.22, 팜플렛 등을 통해 자신이 개발·공급하는 충청북도 청원군 소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분양광고를 함에 있어서 광고 당시 동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건축평형에 대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상 공동주택용지의 위치(블록)별 면적·세대수·용적율 등을 기재한 표 아래에 “※ 지정용도는 공동주택(APT) 건설용지이며, 블록별 용적율 및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평형의 제한은 없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동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건축평형에 대한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건축평형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p>

1999. 5. 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다이어트 운동기구 관련 21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9811광고1917, 1919~1936, 1949, 9812광고2052) (주)신한전기, (주)코리아아이에스티, 썬전자, 광동건강(주), (주)옵스, (주)</p>	<p>(주)신한전기 등 다이어트 운동기구 관련 21개 사업자는 「비즈니스700」, 「모아모아720」 등 자신이 취급하는 유산소 다이어트 운동기구에 대하여 '97년부터 '98년까지의 기간 중 중앙일보 등 신문, 카탈로그 및 DM전단 등을 통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취급하는 운동기구로 운동할 경우 체중감소, 허리·힙·허벅지·다리 등 특정부위의 체지방 감소 및 탄력 강화로 아름다운 몸매</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주)신한전기, (주)코리아아이에스티, 썬전자, 광동건강(주)는 각각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주)옵스, (주)유일</p>

사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p>유일씨엠, 컴앤컴코리아, 제일상사, 파랑새, (주)태경그린, 황소흙쇼핑(주), 비씨카드(주), 대한통운(주), 외환신용카드(주), 삼성카드(주), 동양카드(주), 국민신용카드(주), LG신용카드(주), SK상사(주), (주)신세계백화점, 롯데쇼핑(주)</p>	<p>를 만들어 주는 효과와 원활한 혈액공급 등을 통해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등의 비용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였으며, 동 운동기구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고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취급하는 운동기구로 운동할 경우 장기능 개선, 혈액순환 촉진, 척추교정, 폐기능 강화, 성인병 및 노인병의 예방과 치료 등 의학적 치료영역에 속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으며, 최근 상당기간 거래가격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마치 고가로 판매하던 상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였으며, 의학박사나 한의사 등 전문인의 추천내용을 왜곡하여 광고상에 표현함으로써 마치 전문인인 동 운동기구가 다이어트 및 성인병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추천한 것처럼 표현하여 광고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나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씨엠, 컴앤컴코리아, 제일상사, 파랑새, (주)태경그린은 각각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황소흙쇼핑(주), 비씨카드(주), 대한통운(주), 외환신용카드(주), 삼성카드(주), SK상사(주), (주)신세계백화점, 롯데쇼핑(주)는 연명으로 2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37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p>
<p>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의 부당한 광고행위 (9812광고2194)</p>	<p>사회복지법인인 세웅실버는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인 「보리수마을」의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 '96.7.8.자 동아일보 등 신문, 카탈로그 및 팸플렛 등을 통해 광고함에 있어서 「보리수마을」의 실제 관리·운영자인 자신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은 채 “대한불교조계종 보리수마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보리수마을”이라고 표시하는 등 「보리수마을」의 관리·운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보리수마을」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관리·운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명령을 받은 사실을 이 건과 관련하여 이미 광고한 횟수가 가장 많은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p>
<p>한신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9904부사0409)</p>	<p>한신건설(주)는 '97.12.14.부터 '98.8.30.까지의 기간 중 부산일보와 MBC라디오 및 전단지 등을 통하여 자신이 분양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는 기장 대변농수산 활어시장 상가건축물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기장 대변지역의 활어시장 상권이 타지역의 활어시장 상권에 비해 매출이 많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의 추종을 불허하는 매출 1위의 상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며, 연화리지역을 매립</p>	<p>명령을 받은 사실을 이 건과 관련하여 이미 광고한 횟수가 가장 많은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하여 관광위탁단지를 조성하다는 구체적인 사업결정이나 장기적인 계획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3만평 규모의 연화리 매립지에 관광위탁단지가 조성된다고 사실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며, 자신이 분양하는 동 상가건축물이 실제로는 1,305평의 부지위에 신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여평의 부지위에 동 상가건축물이 신축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며, 실제로는 법정주차대수의 4배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주차대수의 4배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른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1999. 5. 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주)신도리코의 차별적취급행위 (9810경축1800)</p>	<p>(주)신도리코는 '98.5.28. 「강남구청 복사기 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업체인 신도강남센타와 자신의 계열사인 신도사무기(주)에 대해 자신이 제조하는 복사기 30대를 공급하면서 복사기 납품 입찰시 대리점이 특별가격을 요청하면 할인된 공급가를 적용해주는 제도가 있어 신도강남센타도 '95년 등 5차례에 걸쳐 동 제도를 이용한 바 있고, 신도강남센타가 동 입찰 전에 자신의 서울지사에 입찰참가 사실을 알리고 특별가격으로 복사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 입찰시 자신의 계열사인 신도사무기(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공급가격에 관하여 신도강남센타에게 불리하도록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등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2호 위반</p>	<p>◎ 차별적취급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과 동시에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유통점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1999. 5. 1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해태제과 남산대리점의 사업활동방해행위 (9811부사1890)</p>	<p>해태제과 남산대리점은 자신으로부터 방과류를 공급받던 소매점인 “농심가슈퍼”가 공급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기간이 종료된 '98.9.31. 자신과 거래를 끊고 '98.10.2. 공급가격 등에 있어 보다 유리</p>	<p>◎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4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한 조건을 제시한 롯데삼강부산영업소로 거래처를 전환하여 제품을 공급받으려 하자 동 영업소의 “농심가슈퍼”에 대한 제품 반입을 저지하고 기 설치된 냉동고의 회수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동 영업소로 하여금 부득이 제품공급을 포기하고 철수하도록 함으로써 “농심가슈퍼”가 거래처를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소매점의 거래처 이전을 방해하거나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소매점과의 거래성립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1항제5호 위반</p>	<p>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과 동시에 농심가슈퍼, 롯데삼강부산영업소 및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소매점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주)세계로유통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9812유거2067)</p>	<p>(주)세계로유통은 구 경품고시에 따라 경품부상품의 거래가액이 1만원인 경우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한도는 8만원이며, 총액한도는 예상매출액의 1%임에도 불구하고 '98.11.12.부터 11.21.까지 자신의 매장에서 1만원 이상을 구입한 고객에게 응모권을 교부하고 '98.11.22. 추첨을 통해 시중가격이 각각 3,290천원인 승용차(마티즈) 1대와 630천원인 냉장고 1대, 300천원인 21인치 TV 1대, 265천원인 VCR 1대 등 총계 4,785천원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한도인 8만원을 185천원 내지 3,210천원 초과하여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총액한도에 대해서는 자신의 예상매출액의 1%인 632,390원을 4,152,610원 초과하여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 적법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한도와 총액한도를 초과하는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p>	<p>◎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매장 정문 출입구에 전지크기(78.8cm×109cm)의 공표문으로 7일간 게시하여 공표토록 함</p>

1999. 5. 2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맥주제조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9901단체0073) (주)두산(구 오비맥주(주), 하이트맥주(주), 진로쿠어스맥주(주))</p>	<p>(주)두산(舊 오비맥주(주)) 등 맥주제조 3개사는 사전에 업무연락 및 사전협의 등을 통해 하이트맥주(주)는 '98.2.21, (주)두산(舊 오비맥주(주))는 '98.2.23, 진로쿠어스맥주(주)는 '98.2.24.에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병맥주, 캔맥주 및 생맥주의 규격별 출고가격을 각각 8.5% 내지 14.0%의 동일한 인상율로 인상하는 등 공동으로 맥주 출고가격을 인상하여 국내 맥주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천원) · (주)두산 : 238,200</p>



사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 하이트맥주(주) : 678,200 · 진로쿠어스맥주(주) : 229,500
공문교육연구원(주)의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9810경축1809)	공문교육연구원(주)는 자신의 학습지 구독회원이 구독을 중단하였을 경우 학습지 교사가 제출한 퇴회요청서의 처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담당 학습지 교사에게 구독료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소비자가 자신의 학습지의 구독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임의로 입회 처리함으로써 담당 학습지 교사에게 입회한 사실이 없는 회원의 회비를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자신이 설정한 부합계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학습지 교사에게 자신의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학습지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해태전자(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9812유거2103)	해태전자(주)는 '98.11.7.부터 12.5.까지 29일간 자신이 공급하는 오디오를 300천원부터 10,000천원까지 구입하거나 구입을 예약한 고객이 자신의 대리점에 비치된 응모권으로 응모하면 동 응모자 중 18명을 추첨하여 이중 대학 재학생이나 입학생 3명에게는 각각 4년간 8학기 등록금으로 17,600천원씩을 지급하였으며, 5명의 대학생에게는 각각 2년간의 4학기 등록금으로 8,800천원을 지급하며, 10명의 대학생에게는 각각 입학금 또는 1학기 등록금으로 2,200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경품행사기간 중에 자신이 공급하는 오디오 중 시중가격이 1,199천원인 "홈시어터 5200"이나 시중가격이 698천원인 "P858V", 또는 시중가격이 948천원인 "P747J" 중 1개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장학금과는 별도로 우리나라가 제13회 방콕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를 동반우승하지 못할 경우 시중가 10천원 상당의 CD 5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경품행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적법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한도와 제공기간을 각각 초과하여 경품류를 제공하는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1999. 5. 26. 심결

사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주)빙그레의 부당한 광	(주)빙그레는 '98.12.4.부터 '99.1.4.까지의 기간 중 스포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1999. 5. 2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고행위 (9901광고0033)</p>	<p>츠신문 등 9개 일간지와 TV3사 및 6개 잡지 등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매운콩라면”에 대해 광고하면서 자신의 제품인 “매운콩라면”이 세계 최초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계 최초 제품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으며, 라면제조기름에 대한 영양성분을 비교함에 있어 자신의 제품에 사용하는 기름은 콩기름에 수소를 첨가한 대두경화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콩기름”이라 하여 경쟁업체 라면에 사용하는 “팜유”와 직접 비교함으로써 자사제품 라면에 콩기름을 사용하여 콩기름의 영양성분이 그대로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콩기름에 실제보다 많은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자신의 제품이 경쟁업체의 제품보다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으며, 자신의 100% 콩기름라면에 대하여 세계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준비만을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세계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특허를 출원중이라고 광고하는 등 마치 자신의 라면이 곧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말리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1999. 5. 2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주)대우자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9812유거2183)</p>	<p>(주)대우자판은 '96.11.28. 자신의 완성차를 운·탁송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기존 차량운송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운송업체에게는 시설사용료를 운송차량 1대당 기존 200원에서 2,000원으로 900% 인상하였으며, 탁송업체에게는 탁송차량 1대당 2,700원의 시설사용료를 신규로 징수기로 약정하는 등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운·탁송업체간의 전속적인 거래관행상 특정 자동차제조 또는 판매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운·탁송업체가 다른 곳으로 거래처를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며, 자신의 운·탁송업체와 자신과의 거래액이 평균적으로 총매출액의 80%에 이를 만큼 과도하게 의존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의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p> <p>◎ 과징금 납부 · 308백만원</p>